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97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한지아 · 박덕흠 · 김재섭
고동진 · 서일준 · 이종욱
우재준 · 조지연 · 배준영
조은희 · 김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배후진료”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후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등을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배후진료의 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제13조의3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역 내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설·장비·인력,”을 “시설·장비·인력, 배후

진료를 포함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진료”를 “응급의료 및 배후진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및 배후진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배후진료”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후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등을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배후진료의 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3. ~ 8. (생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마. (생 략) <u><신 설></u> 바. (생 략)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생 략)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생 략) <u><신 설></u>	2.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u> 사. (현행 바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지역 내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u>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u>
--	--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u>시설·장비·인력</u>,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u>진료</u> 2. ~ 5. (생략) ② (생략)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u>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 ----- <u>시설·장비·인력</u>, <u>배후진료를 포함한</u>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 ----- ----- ----- ----- ----- ----- -----. 1. ----- <u>응급의료 및 배후진료</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

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u>1. 응급환자의 진료</u> 2. (생략) ② (생략)	① ----- ----- ----- ----- ----- ----- -----. <u>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및 배후진료</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